

明細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李 亮 求
〈國際特許研修院 부교수〉

◎ 目 次 ◎

- I. 序 論
- II. 現行法下의 補正制度
- III. 明細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 IV.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措置
- V.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不採擇에
다른 不服方法
- VI. 改善方案
- VII. 結 論

〈이번 號에 全載〉

I. 序 論

特許制度中 先願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경우에는 出願을 서두르는 關係때문에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記載의 表現, 請求範圍의 內容 및 先行技

術의 調査等を 完全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出願當時에는 完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明細書라도 審査 또는 審判過程에 있어서 請求範圍의 減縮等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하여야 할 必要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審査 請求制度의 導入으로 特許出願의 경우에 있어서는 5年(優先權 主張을 한 出願은 6年)이 거다 되어 審査請求를 하려고 出願當初의 明細書 및 圖面을 檢討하여 보면 出願後의 技術의 進歩 또는 그 發明에 對한 試驗 研究等を 實施한 경우에 있어서는 出願當初의 明細書의 記載가 만족스럽지 못한 곳이 發見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위의 같은 事情때문에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할 경우 出願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に 記載되지 않았던 事項이 變更 또는 追加되어 要旨變更의 問題가 發生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行法下에서는 要旨變更의 判斷基準이 抽象的이어서 明確치 않을 뿐 아니라 要旨變更을 둘러싸고 그 補正書를 檢討한 審査, 審判官과 出願人 사이에 見解差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이 要旨變更된 補正書를 採擇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不服制度가 合理的이지 못하여 出願人의 救濟가 소홀히 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現行法下의 明細書의 補正과 要旨變更의 判斷 및 그 不服方法을 檢討하고 그 改善方案을 提供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이 있다.

II. 現行法下의 補正制度

가. 概 說

補正이란 出願의 內容을 自進하여 또는 命令에 의하여 訂正·補充하는 것으로 節次에 關한 補正과 明細書 또는 圖面に 關한 補正으로 區分된다(特許法 第10條의2). 위의 補正中 明細書 또는 圖面(以下 明細書라 한다)의 補正은 出願人이 自由로 하도록 하면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므로 特許法은 補正制限主義를 採用하여 內容과 時期에 對하여 制限을 하고 있는 바, 內容을 制限하는 理由는 出願當初의 明細書를 補正하면

그 補正效果는 出願日까지 소급되는 것이므로當初 記載되지 않았던 事項이 特許를 받게되는 結果가 되어 先願主義에 反하게 되고 또한 出願當初에는 請求範圍를 좁게 記載하였다가 特許後에 請求範圍를 넓게 補正하게 되면 法的安定性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時期를 制限하는 理由는 審査節次等を 지연시키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나. 出願公告決定謄本 送達 前의 補正

補正範圍는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된 事項의 範圍內에서 請求範圍를 增加·減少 또는 變更하는 것은 可能하다. 換言하면 要旨變更이 되지 않는 限 自由이다(特許法 第10條의3).

補正時期는 出願日(優先權主張을 認定받은 出願인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年 3月內이면 審査請求의 有無에 關係없이 自進 補正할 수 있다(特許法 第10條의2 第2項). (審査請求가 되어 있으면 1年 3月內에 審査에 着手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審査를 혼란 시킨다는 理由로 反對說¹⁾이 있다).

出願日로부터 1年 3月 經過後일 때에는 ①出願인이 審査請求하는 경우 그 審査請求와 同時에 ②出願인이 아닌 者로부터 審査請求가 있다는 通知를 特許廳長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3月內에 ③ 拒絕理由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하는 경우 그 意見書 提出期間內에 ④ 拒絕査定不服 抗告審判을 請求하는 경우 그 審判請求日로부터 30日內에 限하여 可能하다(特許法 第10條의2 第3,4項).

다. 出願公告決定謄本 送達後의 補正

出願公告決定은 審査가 일단락된 狀態이므로 明細書가 補正된다면 審査를 다시 하여야 되고 出願公告에 의하여 發生되는 臨時保護의 權利(特許法 第91條)의 範圍가 變動되므로 法的安定性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出願公告決定 後의 補正은 原則적으로 禁止되고 例外的으로만 認定

된다. 補正이 認定되는 例外는 ① 異議申請에 對한 答辯書를 提出하는 경우 그 答辯書 提出期間內에 ② 出願公告決定 後 拒絕理由가 있을 때 意見書를 提出하는 경우 그 意見書 提出期間內에 ③ 拒絕査定不服 抗告審判을 請求하는 경우 그 審判請求日로부터 30日內에 限하여 請求範圍의 減縮, 誤記의 訂正, 명료하지 않은 記載의 釋明만을 補正할 수 있다(特許法 第10條의2 第3項).

Ⅲ. 明細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가. 審査基準

要旨變更이란 明細書의 要旨 即, 請求範圍에 記載한 技術의 事項을 變更시키는 것으로서 明細書를 補正한 結果 明細書의 要旨가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한 事項의 範圍內」가 아닌 것으로 되었을 때 그 補正은 明細書의 要旨를 變更시킨 것으로 取扱도록 하고, 要旨變更을 判斷할 때의 注意事項으로서 ① 各各의 補正은 항상 出願當初의 明細書만을 比較對象으로 하고 ② 當業者가 出願當初의 明細書의 記載로 보아서 自명한 事項은 記載된 事項의 範圍內로 간주하며 ③ 記載된 事項의 範圍內의 判斷은 請求範圍의 變更與否뿐 만 아니라 請求範圍는 變하지 않았더라도 明細書를 補正한 結果 請求範圍에 記載된 技術的事項이 實質적으로 變更되는 지의 與否에 對하여도 注意하여야 하며 ④ 發明의 目的 또는 用途를 附加 또는 變更시키는 補正에 對하여도 그 補正에 의하여 請求範圍에 記載된 技術的 事項이 實質적으로 變하는 지의 與否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記載하고 있다. 그리고 이 基準은 出願公告決定謄本의 送達 前後를 불문하고 適用되도록 하고 있다.

나. 外國의 立法例

先進國의 特許法은 모두 要旨變更에 關한 規定을 두고 있는 바 美國은 發明의 開始에는 새로운 事項(New Matter)을 追加하는 補正은 不

註 1. 金源鎬外2 特許法概說 p. 208

認定하고 있으며(法 第132條), 西獨은 出願內容의 擴張補正은 어떠한 權利도 發生하지 않는다고 定하고 있으며(法 第38條), 유럽 特許條約에서는 最初에 出願한 內容을 超過하는 主題事項(Additional Subject Matter)을 包含한 補正은 不認定하고 있으며(法 第123條) 이러한 補正은 法 第123條 違反으로서 拒絶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日本은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된 事項의 範圍外의 事項은 要旨變更으로 認定하고 있다(法 第41條).

또한 現在와 같은 技術進步時代에 있어서는 發明은 점차 복잡화되고 있으며, 하나의 發明을 完成시킨 후에도 먼저의 發明과 關聯된 改良發明 등이 계속 出現되므로 이 改良發明 등을 먼저의 發明에 包含시키면 技術開發된 內容의 權利保護가 完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改良發明 등을 먼저의 發明에 包含시키게 되면 要旨變更의 問題가 發生되므로 西獨, 英國, 日本 등에서는 第1의 國內 特許出願後에 當該 出願에 關한 發明과 關聯된 改良 또는 發展된 새로운 事項(New Matter)을 먼저의 特許出願에 追加할 수 있도록 하는 國內優先權制度를 採用하여 要旨變更 問題와 關聯하여 생기는 權利의 不安定 狀態를 해소하고 있다.

다. 關聯判例

1). 우리나라의 判例

○ 大法院 87. 5. 12宣告, 84후 125判決

(前略) 要旨變更이라 함은 最初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및 圖面과 그 후에 補正된 明細書 및 圖面을 상호 比較하여 最初에 出願된 特許請求의 範圍에 새로운 要旨가 追加 變更되는 등 그 內容에 同一性을 認定할 수 없는 정도의 實質的인 變化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만약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變更이라면 要旨의 變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中略) 原 審 判決理由에 要旨變更의 事由를 具體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說示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說示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最初의 出願書 만에 의하여 그 要旨가 不明確하며

(中略) 原 審 判決에는 필경 要旨變更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거나 審理를 다 하지 아니하고 審決에 그 理由를 갖추지 아니한 違法이 있다할 것이다(後略).

※ 同旨의 判例는 大法院 87. 8. 25宣告, 86후 112判決 및 大法院 89. 2. 28宣告, 86후 113判決 등에서 볼 수 있다.

2) 日本의 判例

○ 最高裁 昭 47. 12. 14判決, 昭 41(行ツ) 第1號(特許判例百選(第2板 p. 76))

(前略) 實質적으로 特許請求範圍를 擴張 또는 變更하는 訂正은 (中略) 第3者의 利害調整의 見地에서 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解析된다.

上記와 같이 解析되는 이상 特許法 第126條(우리나라 特許法 第63條 第2項과 類似함)에 規定된 實質上 特許請求範圍를 擴張하는 變更을 하는 訂正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當該 發明의 構成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事項에 對하여 그 內容의 範圍, 性質 등을 擴張 또는 變更한 것 即, 訂正前과 訂正後에 있어서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는 限界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解析하는 것이 明白하다(以下 構成에 對하여 具體적으로 對比 判斷한 것은 省略)

○ 東京高裁 昭 41. 8. 25判決, 昭 35(行ナ) 第4號(特許判例百選(第2板) P. 78)

(前略) 出願當初의 圖面 및 說明書의 一部를 訂正하는 것이(中略) 當該 出願의 要旨를 變更하는 지의 與否는 出願當初의 圖面 및 說明書와 訂正된 圖面 및 說明書의 各 記載를 形式的으로 比較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實質적으로 當該 出願 考案의 本質 乃至 實體에 變動이 있는지의 與否를 決定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中略).

訂正이 許容되는 範圍를 너무 좁게 할 때에는 出願人의 利益保護에 缺點이 있고(中略) 訂正이 許容되는 範圍를 너무 擴大할 때에는 當該 出願 考案과 先, 後願의 關係에 있는 第3者 등의 利益을 해치고 소위 先願主義를 採用한 法의 趣旨에

反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이 明白하기 때문에 서로 對立하는 利害의 調和點을 發見하여 위의 訂正이 許容되어야 할 範圍를 定하는 基準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觀點에서 實質的으로 考察하여서 訂正의 許否를 判決하는 것은 앞의 利害調和의 要請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以下 構成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對比 判斷한 것은 省略).

3) 美國의 判例

○ In re Oda CCPA事件

(前略) 制定法 自體에는 무엇이 New Matter 인지에 대하여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떠한 變更이 New Matter로서 禁止되어 있는 지는 Case by Case에 의하여 定하여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여러가지 解說에는 New Matter란 「出願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に 記載되어 있지 않고 처음의 發明과 먼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전혀 別個의 發明 또는 記載된 發明의 構成을 變更하는 것 등을 가르킨다」고 解說하거나 「그 發明의 實施 또는 記載의 完全성에 필수적인 誤記의 訂正 또는 特徵의 脱落의 補充을 目的으로 하는 訂正은 만일 誤記가 明白하고 明細書 作成者의 事務上의 오류이거나 發明者가 出願의 방식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러한 訂正이 發明의 要旨를 變更하는 것이 아니라면 許容된다」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共通된 基本原則은 出願 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한 發明을 變更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結論한다(以下 具體的 對比 判斷은 省略).

IV.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措置

審査官 또는 審判官은 出願人이 提出한 補正書가 要旨變更된 것이라고 認定된 때에는 그 補正書를 採擇할 수 없는 理由를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 명의로 出願人 또는 異議申請人에게 文書로서 通知하고 意見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特許法 施行規則 第16條), 審査關係事務取扱規程 第31條에는 提出된 補正書가 要旨變更된 것이라고 認定된 때에는 그理由를 特許廳長

명의로 出願人에게 通知하고 意見書 提出의 機會를 주어야 하며, 提出된 意見書에 의하여 서도 採擇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補正書는 要旨變更 되었으므로 採擇하지 않는다는 趣旨를 通知하도록 하여 審査官의 裁量을 억제하는 수단만을 가지고 있다.

V.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不採擇에 따른 不服方法

要旨變更된 補正書를 採擇하지 않았을 경우 現行法下에서는 出願人이 不服할 수 있는 制度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要旨變更된 補正書와 關聯된 當該 出願人이 拒絕査定 되었을 경우에만 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할 경우에 限하여 그 抗告審判의 請求理由에 拒絕査定 不服理由와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不採擇에 따른 不服理由를 함께 主張하여 간접 不服할 수는 있다.

그러나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不採擇에 따라 權利의 侵害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行政審判法에서 定하는 行政審判의 對象²⁾이 되므로 行政審判은 請求할 수 있다.

VI. 改善方案

가. 補正書 不採擇時의 不服方案 講究

出願人이 提出한 補正書를 審査·審判官이 要旨變更이라고 判斷 그 趣旨를 通知한 후에는 現行 特許法下에서는 不服制度는 없고(當該 出願人이 拒絕査定 되었을 경우 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에 의하여 明細書의 要旨變更에 대하여 間接的으로 不服할 수는 있음),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의 請求만이 可能한바 行政審判은 特許分野를 잘 알지 못하는 特許廳의 上級 行政機關인 商工部가 裁決廳이 되므로(行政審判法 第5條)特

註 2) 行政審判法 第3條(行政審判의 對象) 行政廳의 處分 또는 그 不作爲에 對하여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許事件은 專門的인 技術이 없이는 다룰수 없기 때문에 法律專門知識만을 가진 法官으로 構成되는 法院의 管轄로 하는 것보다 特別行政官廳인 特許廳에 擔當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趣旨⁸⁾로 볼때 出願人의 利益保護가 소홀히 될 경향이 농후하다.

日本의 경우에는 出願人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補正却下制度和 補正却下 決定에 對한 審判制度⁴⁾ (日本 特許法 第53條 및 第122條 參照)를 두고 있으나 이 制度는 特許無效審判等과 같이 節次가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여 處理期間, 費用面 등에서 經濟的이지 못하다. 上記한 點을 감안하여 出願이 審査에 係屬中인 때에 要旨變更에 의하여 補正書를 不採擇할 때에는 現行 異議決定과 같이 審査官 合同으로 이를 決定하고 不採擇의 趣旨를 通知한 후에 出願人에게 補正書 提出機會를 부여하여⁵⁾ 出願人의 要旨變更에 關한 실수를 補完하여 주고, 위의 不採擇 通知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경우에는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當該 補正書의 不採擇에 따른 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시된다.

위와 같이 要旨變更의 判斷에 신증을 기하므로써 審査官 또는 審判官과 出願人의 見解差에 따른 差를 極少化할 수 있고, 出願人에게 再補正의 機會를 주므로써 복잡한 審判制度에 이르지 않고 要旨變更問題를 거의 解決할 수 있고 不服審判制度를 마련하므로써 그 救濟에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나. 要旨變更을 看過 또는 誤認하여 補正書가 採擇된 경우의 第3者의 救濟 措置 講究

出願公告決定謄本の 送達 前 또는 後에 한 補正이 要旨變更이 된 것임에도 不拘하고 審査官 또는 審判官이 看過 또는 誤認하여 그 補正書가 採擇되므로써 出願日이 不當하게 소급되어 第3者의 利益을 害치는 경우가 特許權設定登録後에 發見되는 바 現行法에는 第3者의 不利益을 救濟하는 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日本의 경우에는 第3者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出願公告決定謄本の 送達 前에 한 補正이 特許權設定登録 後에 要旨變更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그 補正은 有效하나 當該 出願은 補正書 提出日에 出願한 것으로 간주하며(日本 特許法 第40條 參照), 出願公告決定謄本の 送達後에 한 補正이 特許權設定登録 後에 要旨變更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그 補正은 無效이고 그 補正前의 特許出願에 對하여 特許가 된 것으로 認定(日本 特許法 第42條 參照)하여 第3者에게 不當한 不利益을 주지 않도록 措置하고 있다.

上記한 出願日을 補正書 提出日로 하는 것(出願日의 늦춤)과 補正無效를 認定하는 것은 審判官 등이 하며, 第3者는 늦추어진 出願日을 基準으로 하거나 補正이 無效인 것을 主張하여 特許無效審判 또는 先使用權等을 主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上記한 日本의 경우처럼 出願日의 늦춤과 補正無效制度를 導入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認定되나 補正의 一部에만 要旨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出願日의 部分늦춤⁶⁾과 補正의 部分無效도 신중히 檢討하여 하자가 없는 部分을 救濟하므로써 特許權者가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⁷⁾.

다. 國內優先權制度의 導入

國內優先權制度는 技術開發內容의 權利保護에 完全을 이룰수 있고 第1의 國內 特許出願後 1年 以內에 새로운 事項을 追加하는 것을 可能토록 하므로써 要旨變更 問題가 部分的(出願日로 부터 1年 以內에 補正하는 경우)으로는 解決할 수 있어 特許廳의 事務를 경감하고 出願人은 계속적으로 發生되는 研究結果의 權利化에 有用한 點 등이 없으므로 이의 導入을 적극적으로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註 3) 李秀雄, 工業所有權法, P. 275

4) 이 制度는 現在 日本만의 特有的 制度이다(日本 特許管理 Vol. 21 No. 12, P. 1159)

5) 現行 特許法下에서도 要旨變更된 補正書와 關聯된 當該出願이 拒絕査定되었을 경우 이에 不服하여 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할 경우에는 請求日로부터 30日 以內에 要旨變更되지 않은 補正書가 提出되면 이 補正書가 採擇된다.

6) 判例 4조 F의 部分優先權主張의 趣旨와 같음

7) 日本 特許管理 Vol. 28 No. 9 p. 1025

라. 要旨變更 判斷基準適用의 統一

現行 特許法 및 明細書의 要旨變更에 關한 審査基準에는 補正이 許容될 수 있는 限界가 抽象的이므로 Case by Case에 의하여 補正의 許容範圍를 定할 수 밖에 다른 方法이 없다 하더라도 既存의 審査基準 또는 判例等을 無視한채 審査官 또는 審判官의 裁量에 따라 그 判斷이 行하여 지는 경우가 있어서 審査基準 및 判例等の 適用에 統一化가 이루어져야 할 必要性이 絶실히 要請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審査官 合同判例 研究 및 發表會와 敎育等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마. 要旨變更判斷時의 審査 및 審理의 徹底

上記한 우리나라와 外國의 立法例 審査基準 및 判例를 綜合하면 明細書補正의 許容限界는 거의 共通의이며, 우리나라와 類似한 法制 및 審査基準으로 運用되고 있는 日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審査基準 및 判例와 同一하게 判斷하고 있으며, 또한 日本은 判例와 學說도 一致하고 있다⁸⁾.

그러나 上記 日本의 判決(昭 57.5.25判決, 昭 56(行ケ) 第21號)을 보면 要旨變更에 對한 理論說示와 出願當初의 明細書와 補正된 明細書を 具體적으로 對比 判斷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上記한 우리나라의 判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要旨變更에 對한 理論說示나 그 事由를 具體적으로 論理整然하게 說示하지 않으므로서 심리미진의 違法이 되는 경우가 많은바 審査 및 審判時에 있어서 理論說示와 그 事由를 具體적으로 對比判斷하므로써 出願人의 理解를 도모하여 差錯도 極少化하고 出願人과 特許廳의 經濟的 負擔等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VII. 結 論

要旨變更의 判斷은 出願當初의 明細書와 補正

된 明細書의 本質 乃至 實體에 實質的인 變動이 있는지의 與否를 具體적으로 對比하여 出願人과 第3者에게 不當한 不利益을 주지 않도록 그 調和點을 發見하여 決定하고, 補正書의 不採擇에 있어서는 出願人의 不利益이 招來되지 않도록 特許行政의 生命인 신속, 公正, 정확, 경제성을 감안하여 不服制度를 補完하며, 要旨變更을 看過 또는 誤認하여 特許權이 設定되었을 경우에도 第3者의 利益을 害치지 않도록 함과 同時에 特許權者의 不利益도 防止하기 위하여 出願日의 部分늦춤制度도 導入이 檢討되어야 하고, 出願後 1年 以內에 完成되는 改良發明과 關聯하여 國內優先權制度의 導入도 바람직한 것이므로 이의 導入으로 要旨變更의 判斷時의 審査, 審判官과 出願人의 差錯을 감소시키고 技術開發된 內容의 實質的인 權利保護가 되도록 하므로써 特許制度의 國際化추세에 부응하고 出願人과 第3者의 利益과 期待를 充足하여 民本行政을 實現 特許行政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國家産業 發展에 寄與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參考文獻

1. 南啓榮外3, 新特許法, 서울, 考試界, 1987
2. 李秀雄, 工業所有權法, 서울, 瑞興出版社, 1983
3. 金源鎬外2, 特許法概說, 서울, 大光書林, 1985
4. 李尙圭, 新行政法論(上), 서울, 法文社, 1988
5. 滝野文三, 工業所有權法(上), 日本, 中央出版部, 昭 54
6. 日本特許廳, 工業所有權法逐條解說, 日本, 發明協會, 昭 58
7. 日本發明協會, 判例特許訴訟法, 昭 61
8. 特許廳, 審査一般基準
9. 日本許許協會, 特許管理 Vol. 21, 28, 32.
10. 特許判例百選(第2板), 日本, 有斐閣, 1985

8) 東京高裁 昭 57.5.25判決, 昭 56(行ケ) 第21號 (日本 發明協會, 判例特許訴訟法, p. 146)